

한국정책금융공사 청년창업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
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 청년창업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개요

| 항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위탁운용 금액 및 운용사수 | ○ 300억원 (3개사 각 100억원) |
| 출자대상 투자기구 | ○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○ 「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」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|
| 운용사의 신청자격 | ○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 관련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의 집행이 가능한 공고일 현재 설립된 법인 ※ 2개 이상의 운용사 공동 신청은 허용하지 않음 |
| 운 용 사 선정방법 | ○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일괄심사방식으로 선정 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|
| 접수 마감일 | 2011년 6월 28일(화) (16시 限) |
| 최종 선정일 | 7월 하순 |
| 조 합 결성시한 | ○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- 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2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|

2. 출자분야

□ 투자대상은 법인 형태의 중소기업에 한하며,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%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함

□ 주목적 투자대상

| 출자분야 | 주목적 투자대상 |
|--------------|--|
| 청년창업 초기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래 ①의 청년기업이고 아래 ②의 창업초기인 중소기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「청년기업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(청년 대표자)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기업 ii) (청년 경영진) 만 39세 이하인 사내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인 기업 iii) (청년 고용)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20% 이상인 기업 ②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「창업초기기업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i)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ii)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이고 투자 직전연도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기업 |

3. 주요 출자조건

| 항목 | 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공사 출자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정총액의 90% 이내 ※ 한국모태펀드가 출자 예정인 펀드에 대해서는 공사 출자비율 한도에서 한국모태펀드 출자비율을 차감하여 적용 |
| 공사 출자 약정액 및 최소 결성금액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사 출자약정액 : 100억원 ○ 최소 결성금액 : 112억원 이상 |
| 운용사 최소 출자비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정총액의 10%이상 (계열사 출자금액 포함) |

| | |
|---------|---|
| 존속기간 | ○ 9년 이내 (2년 이내 연장 가능) |
| 투자기간 | ○ 펀드 결성일로부터 4년 이내 |
| 관리보수 | ○ 결성일로부터 2년까지 : 약정총액의 2.7% 이내 ○ 결성일 2년 이후 : 투자잔액(분기말평균)의 2.7% 이내 |
| 추가 관리보수 | ○ 결성일 다음연도 이후 4개 회계연도 동안 일자리창출 및 지방소재 기업 투자실적에 따라 익년도 관리보수에 약정총액 대비 아래 지급율(최대 0.5%)로 산출한 금액을 적용 추가지급 ※ 추가 관리보수 지급율 (① + ②) ① $\frac{\text{매년말 투자기업 총종업원수} - \text{투자시점 투자기업 총종업원수}}{\text{약정총액(억원)} \times 3} \times 0.3\%$ * 0.01% 미만 절사하며 최대 0.3%까지 지급 ② $\frac{\text{매년말 지방소재기업 투자누계액}}{\text{약정총액} \times 50\%} \times 0.2\%$ * 0.01% 미만 절사하며 최대 0.2%까지 지급 |
| 성과보수 | ○ 기준수익률(IRR 6%) 상회시 초과이익의 50%이내 |
| 납입방식 | ○ 펀드설립시 약정총액의 20%, 이후는 수시납 또는 분할납 |
| 출자자 제한 | ○ 출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법인으로 제한 |
| 우선손실충당 | ○ 약정총액의 5% 이상을 운용사가 우선손실충당 |
| 수탁회사 | ○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, 펀드자산 관리 ○ 펀드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의 확정금리부 금융상품에 운용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|
| 회계감사인 | ○ 공사가 지정한 회계감사인 Pool에서 선정 |
| ERP | ○ ERP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관련 공사가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|

| | |
|--------------|--|
| 펀드결성 마감방식 | ○ 추가 증액방식(Multiple Closing)은 허용하지 않음 |
| 운용인력 | ○ 대표펀드매니저 1인을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 총 2인 참여 ○ 핵심운용인력 자격 요건 - '투자경력 5년 이상' 또는 '투자경력 3년 이상 및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' 경력을 가진 자 ○ 핵심운용인력 2인은 약정총액의 60% 이상이 투자되기 전에는 다른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 겸임을 제한 ○ 펀드 결성시 핵심운용인력은 규약에 기재되어야 함 |
| 기타 | ○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위탁운용사와 개별 협의 ○ 펀드결성 완료시 공사의 기준규약에 따른 약정 체결 |

4. 선정 우대기준

- 핵심운용인력 중 1명 이상이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의 대표자로 2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
- 운용사가 12억원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
- 접수마감일까지 운용사를 제외한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한 경우
- 운용사가 2008. 1. 1 이후 펀드 또는 자체 계정으로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10억원 이상 투자한 경우
- 창업초기 투자기업 경영지원 경험이 있고, 경영지원 시스템 및 인프라를 보유한 경우
- 창업지원 기관과의 실현 가능한 협력방안이 있는 경우

※ 선정 우대 사항 관련자료 제출 방법

- 금융기관 이외 경력이 많은 자 1인의 경력을 제안서 서식 「Ⅲ. 참여 운용인력 현황 및 투자성과」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
 - 회사명, 업종, 직위(대표자/기타 직위), 입사일, 퇴사일 포함
 - * 법인등기부 등본, 재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 첨부
- 창업지원 기관과의 협력방안은 제안서 서식 「Ⅳ. 운용전략」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
 - 업무협약 내역, 과거 협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
- 사업기간 3년 이내 기업 투자실적은 엑셀서식 「제안사 투자현황 엑셀시트 중 기타사항」란에 투자기업의 설립일을 기재

5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거나 과거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이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최근 2년내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대표펀드매니저와 운용사 대표이사가 감독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 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중소기업청 창업투자회사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최소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
- 공사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6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내 펀드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운용사 및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펀드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출자 제한
- 선정된 펀드 중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간 출자 제한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- 접수 마감일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제안사항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

7. 선정 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 심사 → 현장 실사 → 구술 심사 (발표 심의)
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| 일자 | 내용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2011. 6. 28(화) | 제안서 접수 마감 | 16:00까지 |
| 2011. 7월 하순 | 최종 선정결과 발표 | |
| 2011. 10월 하순 | 펀드 결성 완료 |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|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8. 지원방법 및 출자 설명회

□ 지원방법

- 공사가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

※ 『제출서류 및 관련양식』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-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0부)를 제출
- 분량 :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파워포인트 파일 별도 지참)

□ 접수 마감일 : 2011년 6월 28일(화) 16:00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

□ 출자 설명회

○ 일시 : 2011년 6월 9일(목) 15:00

○ 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한국정책금융공사 8층 강당

9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처 : 한국정책금융공사 투자금융부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한국정책금융공사 3층 대회의실)

□ 문의방법 : 투자금융부 벤처투자팀(02-6922-6931~5)

E-mail : kofc-ifd@kofc.or.kr

2011년 6월 8일

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